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8 선고 2020가단529179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염규상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규태

변 론 종 결 2021. 5. 11.

판 결 선 고 2021. 6. 8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65분의11 지분 중 5분의1에 관하여 2019. 1. 18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8,900,000원 한도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8,9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 중 3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65분의11 지분 중 5분의1(= 35분의7)에 관하여 2019. 1. 18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4,071,010원 한도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

원고에게 34,071,0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C은 주식회사 D에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, 원고는 정리금융공사,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아 C을 상대로 대출금채무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. 6. 22. 지급명령(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5946)을 받았고, 그 지급명령은 2018. 6. 27. C에게 송달되어 2018. 7. 12. 확정되었다. 지급명령에 따른 C의 채무원리금은 2020. 11. 13. 기준으로 원금 99,100,000원을 포함하여 587,605,189원에 이른다.

나. 망 E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는 2016. 2. 2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 중 65분의11 지분(이하 ‘이 사건 공유지분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망인은 2018. 12. 31. 사망하였고, 피고(장녀), C(차남), F(삼남), G(차녀), 망 H(장남)의 대습상속인(I, J, K)이 각 5분의1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.

라. 피고와 C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9. 1. 18.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분할협의’라 한다)를 하였다.

마.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2019. 1. 21.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

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피고는 등기 이전인 2019. 1. 18.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L에게 대금 192,570,000원에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도한 다음,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인 2019. 1. 21. L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.

바.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~ 5, 7호증, 을 3 ~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사해행위 여부 및 사해의사 유무

1)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,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).

2) 제1항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,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공유지분 중 자신의 상속분 상당을 피고에게 넘겨줌으로써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 중 C의 상속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만들었으므로,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C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(악의)는 추정된다.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,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분배 내역 등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,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나.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

1)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익자는 사해행위로 이전된 재산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 그런데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이 사건 공유지분 중 C의 상속분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다음 제3자인 L에게 다시 소유권이 넘어감으로써 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C에게 이 사건 상속분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.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상속분의 가액 상당 금전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2) 한편,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,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,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

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,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.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,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,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

한정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). 을 8호증의 기재,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는 L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도 처분하여 대금 192,570,000원을 지급받은 다음, C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하였는데, 망인의 이 사건 공유지분 취득 자금 조성 경위, 망인 자녀들의 망인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유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C에게 28,900,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공유지분 중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응하는 가액은 28,900,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(원고는 매매대금 192,570,000원의 5분의1에 해당하는 38,514,000원을 이 사건 공유지분 중 C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가액이라고 주장하나,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범위는 기여분, 특별수증이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한정되므로, 매매대금 중 C의 법정상속분인 5분의1 상당액을 곧바로 사해행위 취소 범위로 인정할 수 없다).

다. 소결

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약은 28,900,000원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8,9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신종열

[별지(목록)]

부동산의 표시

1. 서울 구로구 M 대 122㎡
2. 서울 구로구 N 대 132㎡
3. 위 제1, 2토지 지상

[도로명 주소: 서울 구로구 O]

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

1층 120.72㎡(주택)

2층 120.72㎡(주택)

3층 120.72㎡(지하실). 끝.